

계약직 임금규정

제정 2014. 01.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소속 계약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에서 채용한 각 부서 소속 계약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 월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제수당을 말한다.
2. 연봉은 직종, 직무, 성과,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연간 임금총액을 말한다.
3. 월급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월단위로 지급되는 급여 또는 연봉을 12분의 1로 균등분할한 급여를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 ① 급여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월 급여 또는 연봉은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책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대신한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은 포괄임금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불방법) ① 보수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국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일할계산) 급여의 일할계산은 월급여를 산정사유발생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상여수당 외) ① 성과상여수당은 직원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승인된 시간을 근무한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연차휴가 등)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제9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보험) 계약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금) ① 계약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계약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급여의 조정) 월급 및 연봉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및 직무를 반영하여 재계약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부-59, 2014.1.22)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